

②이용 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되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급여 자격이 있으며 이를 원칙으로 한다.

-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(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 기초수급자)

-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
-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.
-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.
-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.

③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중 시설 급여 자격이 있는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## 제9조(입소계약)

### ①계약목적

-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(이하 “이용자”)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-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,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-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### ②계약기간

-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 단,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
-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.

-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만큼 연장된다.

-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 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-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,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 제10조(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)

①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
②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③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.

④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